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56,277,684	25,688,331
일반회계	775,288,989	23,258,670
특별회계	80,988,695	2,429,661
기타특별회계	80,988,695	2,429,661
동남권 방사선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27,888,130	836,644
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발리지	4,967,995	149,040
의료급여기금	597,971	17,939
지하수관리	1,282,315	38,469
폐기물처리시설	8,275,202	248,256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13,376	30,40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0,631,610	318,948
원자력발전지역개발	22,973,845	689,215
주차장	3,358,251	100,74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,924,67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